

영주 가흥 리첼 임차인 모집공고[안]

(임대)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안내

-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의할 것을 권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 모바일 청약신청서비스 안내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방문 접수 가능, 신혼부부, 3자녀, 기타 특별공급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 불가)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1,2순위에 한함)	국민은행(주택은행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1,2순위에 한함)
이용방법 및 절차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인터넷청약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청약 ⇒ 인터넷청약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주시 주택과 - 제0000호 (2009. 04. 17.)로 임차인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경북 영주시 가흥지구 102블럭 - 01롯트 외 7필지

■ 대지면적: 34,868.79 ㎡

■ 공급규모: 지하 1층, 지상15층 8개동 706세대 (임대 5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년간)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단위: ㎡, 원)

구 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 번호	주택형	세대별계약면적				대지지분	임대 호수					
				세대별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계	특별			일반	비 고	
				전용	주거공용	소계			3자녀	신혼부부	기타			
공공건설 임대주택			084.6661	84.6661	27.2493	111.9154	35.6489	147.5643	50.4021	110	3	33	11	52
			084.4579	84.4579	29.4720	113.9299	35.5612	149.4911	50.2781	139	10	42	14	59
			074.7167	74.7167	24.6993	99.416	31.4597	130.8757	44.4791	85	3	25	8	41
			059.2111	59.2111	26.0971	85.3082	24.9310	110.2392	35.2486	176	5	53	17	84
합계									510	21	153	50	236	

■ 임대조건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주택형별	임대보증금	계약금	중도금1 (20%)	중도금2 (20%)	잔금	월임대료 세대당	
					계약시	2009. 06.30.	2009. 08.30	입주시		
공공건설 임대주택			C 111.9154㎡	표준	56,132,312	10,000,000	11,226,462	11,226,462	23,679,388	509,438
				전환	89,500,000	10,000,000	17,900,000	17,900,000	43,700,000	
			E 113.9299㎡	표준	57,521,909	10,000,000	11,504,381	11,504,381	24,513,147	513,700
				전환	89,500,000	10,000,000	17,900,000	17,900,000	43,700,000	
			99.4160㎡	표준	50,406,699	10,000,000	10,081,339	10,081,339	20,244,021	450,163
				전환	80,000,000	10,000,000	16,000,000	16,000,000	38,000,000	
			G 85.3082㎡	표준	44,940,694	10,000,000	8,988,138	8,988,138	16,964,418	336,611
				전환	69,000,000	10,000,000	13,800,000	13,800,000	31,400,000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조건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임대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며, 111.9154㎡는 세대당 59,500천원, 113.9299㎡는 세대당 59,000천원, 99.4160㎡는 세대당 52,000천원, 85.3082㎡는 세대당 39,000천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건설업체에 대출되며, 분양전환시 입주자에게 대환됨.
- 분양전환시 입주자에게 대환되는 임대주택기금의 대출기간은 20년(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율은 연 5.2% (2009년 04월 현재)임.
- 본 아파트 입주시 대한주택보증(주)로부터 임대주택법 제12조의 2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게 되며 임대보증금 보증금 수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관계 법령의 변경시 그에 따름)하게 되며, 임차인은 매월 임대료에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함(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 2)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경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음.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일반분양과 동시에 공급됨으로 일반 분양으로 설치 되며(단, 99.4160 / 85.3082㎡는 임대 주택형에 의거 설치) 마감재 및 시공 방법등은 견본주택내에 설치된 마감재 품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 주택의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며, 신청형별란에 표시된 면적은 전용 면적 형별 구분을 위해 표시한 것이니 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평형환산방법 : ㎡ × 0.3025)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면적임.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계단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3자녀이상 가구 특별공급은 건설호수의 3% 범위안에서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공급되며, 신청미달시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입주자 선정기준은 신청자의 자녀수, 구성 세대수, 무주택기간, 영주시 거주 기간 등 배점기준에 따른.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건설호수의 30%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혼인기간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청약저축에 6개월이상 가입해야함)에게 공급.
- 기타 특별공급은 건설호수의 10% 범위안에서 보훈대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공무원, 직업군인 등에게 공급되며, 대상자는 예비입주자를 포함하여 해당기관(보훈청, 중소기업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 등)에서 선정하여 저희 회사에 통보하여 신청 미달시 일반 공급으로 전환됨.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건설호수의 10% 범위안에서 청약저축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며 신청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
- 계약자는 임대차 기간 5년간의 임대료를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와 함께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전환조건에 의하여 당사가 공고한 분양전환금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적용함.(단 임대기간 내 해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납할인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제외한 잔여 임대료는 계약자에게 환불되며, 이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할인율 적용하여 선납하였으므로 별도의 선납할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본 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치됨(설치비용은 임대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임대 조건은 동,향, 층별에 따라 차등 적용이 없음
- 입주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함(입주시 한번만 부과하고 퇴거시 반환함)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추가 납부한 전환 보증금을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임대료에서 차감하여 임대차 계약 할 수 있음.
- 전환한도 및 전환이율등은 건설교통부 고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며 추후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상호 전환함.

■ 임대기간 및 조건변경

- 임대기간 :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되는 주택임, 단,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임대의무기간의 1/2경과후 입주민과 협의하여 분양전환 가능함)
- 임대조건의 변경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산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차임(물가상승률,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 등 증액 청구의 기준에 의거, 최초 입주세대 입주지정 기간을 매년 5%범위 내에서 인상됨

■ 분양전환기준 및 조건 (적용여부)

- 분양전환금액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 3에 의거한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과 상기 분양전환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함
- 분양전환시 당해 주택에 대한 수선, 보수의 범위는 외부도장에 한함.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단,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주택의 가격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수 없음)으로 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적용함.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 가격 (임대주택법 시행 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공고)

(단위 : 원)

신청형별(M2)	계	택지비	건축비	비 고
111.9154	171,764,624	23,463,952	148,300,672	
113.9299	174,043,819	23,406,226	150,637,593	
99.416	152,813,398	20,706,587	132,106,810	
85.3082	128,881,389	16,409,465	112,471,924	

영주 세영 리첼은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단,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수 없음)으로 산정하며,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공통

구분	신청자격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설량의 (3자녀 이상 건설호수의 3%, 신혼부부 건설호수의 30%, 기타 10%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함. -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기간 내에 있는자 및 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최초임차인모집공고일(2009.04.17)현재 영주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자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의 재사용은 불가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모두 무효처리함.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순위별 신청자격 및 접수일정

1) 특별공급

- 신청방법 : 특별공급(신혼부부, 3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등) 신청자가 당사 견본주택 방문 신청
- 접수일시 및 장소 : 2009.04.21 10:00 ~ 12:00
- 동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9.04.21 17:00 ~ / 당사견본주택
- 계약체결일 : 각순위 정당계약체결일 이내
- 구비서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확인서 1통(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발행하는 특별공급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특별 공급 안내

3자녀 특별공급					
<input type="checkbox"/>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09. 04. 17) 현재 영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만 20세 미만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배점표 (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 표기)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	비고	
계	100	기준	점수		
자녀수 (1)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하며, 3세대는 직계존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 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 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영주시 거주 기준	
		5년이상 ~ 10년미만	15		
		1년이상 ~ 5년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우선 공급 및 일반 공급

기타(보훈대상자 등) 특별공급 안내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보훈대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공무원, 직업군인 등으로 해당기관(보훈청, 시·구청, 중소기업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 등)에 통보한 자로서 해당 기관 선정 및 통보 순위에 따름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09, 04, 17)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이나 재혼 후 출산해야함)기 간이 5년 이내 이고, 그 기간에 출산(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하여 자녀가 있는 **자소득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청약 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② 저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 572, 802원 / 단 4인 세대는 2,818,449원) 여야함.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00% 이하 (3, 675, 431원 / 단 4인 세대는 4,026,356원) 여야 함.(맞벌이는 배우자가 6개월 이상 근로에 종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70%를 넘지 않아야 함)
 -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균무월수로 나누어 산정
 - 가구당 소득은 세대주 및 만20세이상 세대원 전체의 소득으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다른 세대로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소득을 산정
 - 흙작 등 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지 못하여 정상 근무시의 소득과 다른 경우, 정상 근무한 시기의 소득을 산정하여 적용
- ③ 거주지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영주시) 거주자

□ 입주자선정방법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이면서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공급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재혼 부부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산정)
 -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우선 공급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안내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청약 저축 1순위자 (영주시 거주자)
2.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계속하여 3년이상(주민등록표 기준)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3. 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추가제출서류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경쟁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1조 제2항의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고 낙첨자는 일반공급 1순위에 포함됨.

□ 일반공급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09. 04. 17.) 현재 영주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 (단,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 받아 청약자격에 가입한 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무순위 신청자는 거주지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함 (단, 만 20세이상인자로 1세대1주택만 신청 가능)

구분	순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거주구분	청 약 관 련 예 금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공공건설 임대주택	1순위	전 주택형	영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단 90.04.28 이전 가입자는 12회 이상 납입한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청약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 청약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2009.0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 결제원(www.apt2you.com) ● 접수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 08:00 ~ 17:30 - 은행 창구 접수 : 09:00 ~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09.04.3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2순위	전 주택형	영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한 분 (단, 90.04.28 이전 가입자는 3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한 분)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2009.0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하셔야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 문의는 최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3순위	전 주택형	영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분 	2009.0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은행 본, 지점 ● 접수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9 : 00 ~ 16 : 00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호적등본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함.

◆ 공급 세대수

주택형(m ²)	특별공급			일반공급	소계	총 계
	신혼부부특별공급(30%)	3자녀특별공급(3%)	기타 특별 공급(10%)			
111.9154	33	3	11	63	110	510
113.9299	42	14	14	69	139	
99.4160	25	3	8	48	85	
85.3082	53	5	17	101	176	

■ 주택 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 취소함.
-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상 처리일)기준임.
- 4. 주택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 소유자로 인정됨.
-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 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 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멀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신청접수 방법

- 총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 구분하여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를 초과할 경우 차 순위는 접수하지 않음.

■ 특별 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04.17) 이후 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3자녀 특별공급

구 분	구 비 사 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 시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점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당해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 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자격에 가입한 자 • 무주택서약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시 작성·제출함) • 주민등록증 (배우자신청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포함) • 도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제3자 대리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본인 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구 分	구 비 사 항	구 分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 시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배우자신청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자 확인각서(접수장소에 비치)-무직자만 제출 • 도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 주민등록등본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당해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 임양인 경우에는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임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혼인신고일 확인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1통 -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인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통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입증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청구) 	제3자 대리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본인 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신축부부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건강(의료) 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혹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 전직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자(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동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 발급받지 못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접수장소에 비치)	* 접수장소

■ 기타 특별공급(보훈대상자 등)

구 분	구 비 사 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 시 (배우자포함)	주민등록등본 1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세대주(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 및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시 작성 · 제출함) • 주민등록증(배우자신청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포함) • 도장(본인신청 시 서명 가능) 	제3자 대리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본인 신청 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 신청시 구비사항(창구 청약자에 한함)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을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세대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에 정확히 확인하시고 청약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는 해당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을 통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구 비 사 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 시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 신청서(1.2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국민은행 본·지점 비치) - 청약예금통장(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 또는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동일세대 구성 시: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가족관계확인서 1통) - 청약 신청금 및 환불계좌 사본(청약자 명의 통장에 한함)(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본인 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증,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수록 신청일 3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함.

■ 3순위 청약 신청금

구 分	주택형별	금 액	신 청 금 납 부 방 법
청약 신청금	전 주택형	100만원	창구청약자께서는 가능한 영주시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 신청금 환불

- 환불신청: 당첨자 발표 익 영업일(2009.05.06)이후 평일 09:30 ~ 16:00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환불장소: 우리은행 본·지점
- 환불대상: 3순위 청약자(당첨자포함)
- 구비서류: ①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② 주민등록증 ③ 청약 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 시에 한함)
- 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①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청약 신청금 환불위임용)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②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생략) ③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④ 위임장
- 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단 지정계좌(청약자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제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 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分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에서 각 주택형별 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임차인을 선정함과 동시에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임차인을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음
일반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당첨자 선정순차 (1,2순위 한함)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공통	- 금융결제원 전산실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임차인을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20% 범위내에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 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함.

■ 인터넷, KB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므로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당첨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舊주택은행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기간	2009. 04. 23~ 2009. 4. 27(10일간)	
이용 방법 및 절차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당첨자사실조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전화 ARS 1369(서비스코드 : 5#)	1588-9999 (서비스코드 :70)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는 공급세대수의 20% 범위내 선정하며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을 실시하며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해야 하며(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의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예비당첨자는 정당 당첨자의 계약체결일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에 대해 공급할 계획이며 견본주택내 입회하신 예비당첨자들의 순위에 따라 잔여세대를 추첨하여 계약.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3일간): 정당 당첨자: [2009. 05. 06(수) ~ 08(금) (시간 : 10:00 ~ 16:00)]
- 1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 지정된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계좌에 무통장입금(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입금자 표기 예) 101동 101호 홍길동 ☎ 홍길동(01010101)
- 아래 계좌에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금 용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00 은행	000000-0000-000000	다인개발(주) 외 1인

* 지정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계약 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 계약금(영주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20세 이상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가족관계확인서 1통(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 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장애인 수첩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 계약위임용)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계약장소에 비치)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부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등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대하여 세대주, 거주 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주택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의 기간(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유지 대상기간)중에 유주택자로 판명된 경우
 - 1순위 당첨자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1,2,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상기 기준에 의거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최소함.
- 당해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 시 1순위 청약 신청에 제한을 받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계약 체결전 사업지 방문을 통해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향후 주변 고층건물 등의 건설 및 주변시설, 협오시설,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계약 체결 후 그 침해로 인한 손해 및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상각의 대지면적이 차후 면적정산으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 변동에 대한 차후 정산금액은 없음.
- 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전대 또는 양도,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당첨 무효 해약 및 퇴거 조치함.
- 임차인으로 선정(3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여야 함.
- 임대주택은 임대차 기간동안 전매(매매, 증여, 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여, 상속인 경우 제외) 및 전대(그 권리의 양도를 포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됨.

-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당첨자)간의 임대차 계약서 체결조건을 준용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용함.

■ 입주예정일 : 2010. 12월 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도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당사는 입주가능일 약1~2개월전에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입주자 여러분이 직접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전 사전점검을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임

■ 임대주택 불법 임차권양도·전대 금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퇴거 조치함.

■ 발코니 확장비용 , 샤시 설치 및 마감재 옵션 관련 사항

- 이 주택에는 발코니 확장 및 샤시 설치 , 마감재 등은 옵션 적용 됨으로 임차인은 견본주택에 별도 설치된 자재 목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옵션 적용 품목은 별도로 계약 체결 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문고 등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주택공급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됨.
- 본 아파트는 임대주택법 제12조 ①항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②항1호에 의거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
-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 하는 경우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함.
- 분양전환에 따른 개별 소유권 이전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단지명칭 및 동표시, 외부색체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공고의 명칭과 상이 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시 공급 가격에 의해 정산 처리함.
- 견본주택은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존한 뒤 회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2002.9.3)에 따라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어린이 놀이터 기구는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주택형) 또는(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2)>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2)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형별면적(m^2) × 0.3025 또는 형별면적(m^2) ÷ 3.3058]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단수조정에 의한 경우)
- 주택의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세대평면 등 구조적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단위세대 평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사업지의 난방은 도시가스 개별 난방을 이용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신청자격, 임차인 선정방법 및 모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규에 따름.
- 발코니 확장 및 별도옵션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 및 별도옵션은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별도옵션비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및 별도옵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고, 견본주택 내 미 건립된 주택은 계약 시 마감자재 포함여부를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층으로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입면 차별화 및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측벽, 동출입구,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측벽문양 등의 디자인의 형태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팝플렛 등 각종 인쇄물을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 내 관련도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임차인에 대한 융자 지원으로 임대보증금의 40% 한도내에서 임대보증금 종도금 융자가 가능하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대출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융자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체 일시에 대하여 별도의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정부가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보증관련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다.

■ 연대보증인 : 대한주택보증(주)

구 분	보증기간	보 증 금 액	보증서 번호
영주 세영 리첼	입주자모집공고승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 까지		제000000000-000-0000000호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 대상

1. 보증의 범위

-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대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2.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7.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임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흡오도, 발코니 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임대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임대보증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시행사 및 시공사

● 시행사 : 다인개발 주식회사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 경북 - 주택2008-0002)

● 시공사 :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 경북 - 주택2003-002,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 : 토목건축공사업 16-0052)

■ 감리회사 및 감리 금액

구분	회사명	금액	비고
건축감리	(주)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962,518,159	부가가치세 포함
소방감리	(주)건창기술단	₩88,000,000원	
전기감리	(주)대화엔지니어링	₩388,000,000원	
정보통신감리	(주)건창기술단	₩17,000,000원	

■ 주택분양상담 : 견본주택 054-634-7800

■ 발코니확장공사비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부담금액 (확장공사비-기본공사비)	공사내용
111.9154	3,500,000원	침실1 발코니, 침실 2 발코니, 거실 발코니
113.9299	3,500,000원	침실1 발코니, 침실 2 발코니, 거실 발코니, 주방 발코니
99.4160	2,000,000원	침실1 발코니, 침실 2 발코니, 거실 발코니, 주방 발코니
85.3082	1,000,000원	침실1 발코니, 침실 2 발코니, 거실 발코니, 주방 발코니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 영주시 가흥동 가흥 지구 251블럭 - 01롯트외 세영 리첼 주택전시관(☎ 054 - 634 -7800)

■ 홈페이지 : <http://seyeong.co.kr>